

서울지방세무사회-세무정보(2023-05)

□ 5월의 세무일지

구 분	세 무 일 지
5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말 결산법인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세 분납분 납부기한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고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3월 지급분 일용근로자(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의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3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용근로 제외)
5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법인의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5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5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4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기한
5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서제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확인서제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4월 지급분 일용근로자(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의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4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4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용근로 제외)

□ 기장의무,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할 때 수입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 ②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이 기장의무 판정에 미치는 영향(도·소매업으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2억원으로 가정)

직전연도			당해연도	
기장의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기타수입금액	기장의무 판정 기준 수입금액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15,000,000	290,000,000	290,000,000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15,000,000	290,000,000	290,000,000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를 구분할 때 수입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 ②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세무조정

- ① 원 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인정여부는 법인과 달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 ② 예 외 :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소득령 78의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의무사업자의 경우에도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필요경비인정금액
가입(○)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frac{\text{실제보험가입일수}}{\text{의무보험가입일수}}$
가입(×)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

-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별 보유 차량 대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의무가입자	의무가입자 외의 자
1대	미가입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 경비 인정	업무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 경비 인정
	가입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 경비 인정	
1대를 제외한 차량	미가입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50%를 필요경비 인정	
	가입	업무사용비율과 보험가입기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 차량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저자의 개인의견으로 실제 적용시 과세 관청의 예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p>가. 단독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입니다.</p> <p>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중 1대와 공동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중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p> <p>다.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기장 의무 등 판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p> <p>(가)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 지분율에 상관없이 전체 공동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중 1대는 제외</p> <p>(나) 구성원이 다른 경우 :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사업장별로 보유한 차량 중 1대는 제외</p>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7)

관련 법	필요경비 산입 범위	귀속연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고지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정산으로 인한 차액 추가납부분: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추가납부분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금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라.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신고분납기한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담보제공을 세금포인트로 활용하세요

-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담보면세 신청 가능합니다.(보유한 세금포인트×10만원 담보면제)
 -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 ㉡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②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합니다.
- ③ 세금포인트 확인방법 : 「국세청홈텍스 - 조회 / 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에서 확인 가능
- ④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오의식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완 일 올림